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교통체계관리계정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기여금의 세입·세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공항계정”의 명칭을 “항공공항계정”으로 수정하고,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항공공항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6조 등).

II. 검토의견 : 이미 수납된 부담금의 세입 처리 근거 마련 필요(부칙 제2조)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세출 항목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2020. 4. 7.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과 기존 운송사업(택시 등)간 상생 차원에서,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5% 등 동법 시행령¹⁾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²⁾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기여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기 중에 사업이 시작,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2. 분기 중에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허가대수가 변경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여금이 변경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매출액, 운행횟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 업무, 기여금의 집행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에 법정 부담금³⁾ 세입항목을 신설하고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행법상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항목에 규정되지 않아서 2022년부터 수납해 온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을 세입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플랫폼운송사업 업체별 기여금 수납현황]

사업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합계
A 사업자	13.2백만원	19.7백만원	16.5백만원	2.3백만원	398.2 백만원
B 사업자	9.2백만원	17.3백만원	20.1백만원	—	
C 사업자	48.8백만원	116.8백만원	134.1백만원	—	
D 사업자	—	—	—	—	
E 사업자	—	—	—	—	
합 계	71.2백만원	153.8백만원	173.8백만원	2.3백만원	

* 자료 :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세입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와 같은 법적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인바, 이에 더하여, 이 법 시행 이후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수납된 총 3억 9,820만원⁴⁾의 기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여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법률에 따라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 무이므로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음([별표] 개정. 2023.7.18.).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납된 부담금은 수납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계좌로 관리 중임.

수납금에 대한 세입처리의 근거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납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개정안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 설></u>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u>제2조(계정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u>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항계정은 이 법에 따른 항공공항계정으로 본다.	<u>제2조(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처리를 위한 적용례)</u>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납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u>제3조(계정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u> (개정안 제2조와 같음)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